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2. 29	조례	제1177호
개정	2002. 5. 17	조례	제1277호
	2005. 4. 21	조례	제1387호
	2006. 2. 17	조례	제1429호
전문개정	2006. 8. 29	조례	제1453호(제명개정)
개정	2007. 10. 10	조례	제1559호(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 8. 16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16. 3. 16	조례	제2174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5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697호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36호
일부개정	2023. 3. 10	조례	제2951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22. 1. 24>

제2조(회기) ① 회기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3. 10>

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4>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6, 2019. 6. 25>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6, 2023. 3. 10>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2023. 12. 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2023. 12. 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6. 8. 29 조례 제1453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연간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6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